

[붙임1]

◆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
 — 정관변경 (안) 신/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후 (안)	개정이유
<p><b>제 14조(기준일)</b></p> <p>① (삭제 2023.03.23)</p> <p>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14조(기준일)</b></p> <p>① 좌동</p> <p>② (삭 제 2025.03.26)</p> <p>③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*상법 시행령에 따라,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하도록 함.</p>
<p><b>제 51조의2 (분기배당)</b></p> <p>신설(2025.03.26)</p>	<p><b>제 51조의2 (분기배당) (신설 2025.03.26)</b></p> <p>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,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</p> <p>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</p> <p>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</p> <p>3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</p> <p>4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</p> <p>5. [상법 시행령]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</p> <p>6.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</p> <p>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.</p> <p>⑤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.</p>	<p>*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맞추어 문구 수정</p>
<p><b>부칙</b></p> <p>신설(2025.03.26)</p>	<p><b>부 칙</b></p> <p>21.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변경.시행한다.</p>	